

의안번호	2219431
의 퇴 인	임종득의원
회 답 일	2026.9.1.
추계번호	26B3136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	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(제4항 신설)	의무규정
		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, 임대료, <u>무상운송의 지원기준·방법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</u>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(제5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다음의 이유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첫째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임대 농기계 이용 농업인 중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의 규모와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개정안은 무상운송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함
 - 또한,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모도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지원 수준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둘째,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,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배송서비스의 운영방식과 이용요금 및 이에 대한 자부담 비율 등이 상이한 상황임
 - 일례로 경상남도 함양군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중소형 농업기계 20종 147대에 대한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,¹⁾ 이용요금은 편도 1만원, 왕복 2만원임²⁾
 - 경상남도 함안군은 임대농기계 택배 배송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택배요금의 70%를 지원하고 이용자가 30%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.³⁾ 2026년 기준 왕복 10km에 대한 택배요금은 약 15만원으로, 이 중 약 10만 5천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약 4만 5천원을 이용자가 부담함⁴⁾

1) 「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0조의2(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) ① 군수는 관내에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해 원하는 장소로 농기계를 배송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1농가당 왕복 5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

② 군수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실시한다.

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(이하 “대행업체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·요금표에 따라 지원한다. 이 경우 운반거리, 운반차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서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대행업체는 농기계 배송 완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완료 보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를 배송이 완료된 날의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군수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2) 자료: 경남탐뉴스(<https://www.topnews24.kr>)

3) 「함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2조의2(농기계 택배사업) ① 군수는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신청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 소유자, 부녀자, 노약자 등으로 한다.

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반거리, 운반차량에 따라 택배 임차료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지원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·요금표를 적용한다. 다만, 한 농가에 대하여 연간 왕복 5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운반 농기계는 임차인이 신청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4) 경상남도 함안군 보도자료, “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실시(배송비 70% 지원, 자부담 30%), 2026.

-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화물차에 상차 가능한 기종에 한하여 임대농기계 운반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, 이용자 부담금은 1톤 기준 40,000원 2톤 기준 60,000원임⁵⁾
- 경상남도 남해군은 자기차량이 없거나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기, 트랙터, 시금치파종기 등에 대한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, 이용요금은 편도 20,000원, 왕복 40,000원임⁶⁾
-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 체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,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자부담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장래에 발생할 현행 사업의 변경 내용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[표] 농기계임대사업소 배송서비스 운영 현황(148개 시군 대상)

구분	배송서비스 운영				배송서비스 미운영	합 계
	자체배송	위탁배송	자체·위탁 병행	소 계		
개소수	74	31	10	115	33	148

주: 2024년 기준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셋째, 개정안의 시행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신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으나, 현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추진 여부와 규모·내용 등을 검토하기 곤란하여 장래에 발생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5) 자료: 세종특별자치시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(<https://www2.sejong.go.kr/>)

6) 「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3조(농업기계 배달서비스) ① 군수는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기계에 대하여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배달을 전문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배달서비스 대상 농업기계, 이용료 등 지원기준은 군수가 정하며, 배달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임대 농업기계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임차인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편도 20,000원(왕복 40,000원)의 운반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.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